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독 광부 · 간호사 ·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의료·생활·주거 자원 근거 마련 등〉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31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파독근로자의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 마련 등	3
2.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의 일부 위임	9
※ 참고자료	12
1. 의료·생활·주거 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12

I. 제안경위

2026년 2월 6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 근로자의 헌신과 공로를 기리기 위한 지원 및 기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의 범위와 지원 내용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령화·생활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상당수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고령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로 인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의료·생활 지원이나 주거 안정과 관련한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지원대상을 국적·거주지와 무관하게 명확히 하고, 의료지원·

생활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과독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의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6조).

Ⅲ. 검토의견

1. 파독근로자의 의료·생활·주거 지원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적·거주지와 상관없이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이하 ‘파독근로자’라 함)에게 법률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조), 지원 내용에 의료·생활·주거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제2조(지원대상) ----- ----- <u>국적·거주지를 불문하고 다음과</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을 위한 지원</u>
<u><신설></u>	<u>5.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u>

1960~1970년대 파견된 파독근로자들은 외화를 한국으로 송금하며 국제수지 개선, 국민소득증대 등 국가 경제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의 경력 후 제3국으로 진출하여 재외한인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는데,¹⁾ 현행법은 이러한 파독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걸맞은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²⁾되었음.

현행법³⁾은 지원대상자를 특정한 시기(광부는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에 한국과 독일 사이의 각종 협정이나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로 규정하며,

1)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광부 7,936명, 간호요원 10,723명, 총 1만 8천 659명으로 추산되고, 파독 광부·간호사는 1965년부터 1975년까지 총 101,530천 달러를 송금하였는데, 1965~1967년의 송금액의 경우 총수출액 대비 각각 1.6%, 1.9%, 1.8%였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p.225.]

2)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36호, 2020. 6. 9., 제정]

3) 제2조(지원대상) 이 법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 12월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2.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 8월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파독근로자에게 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 제공 ②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실시, ③ 파독근로자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등을 국가가 지원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파독근로자는 파독기간이 종료된 후 40% 정도는 귀국을 하고, 나머지는 독일에 잔류하거나 유럽, 북미 등 기타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⁵⁾되며, 상당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고령기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됨.

현행법의 지원 내용이 정보 제공 등 간접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파독근로자의 거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료·생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이 국적·거주지와 무관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파독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국가의 의료지원이나 생활·주거지원은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자, 과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희생자·피해자·유가족, 보훈대상자 등

4) 제3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②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p.218.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⁶⁾, 파독근로자,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파독근로자까지 광범위하게 이들과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와 국외거주자와 외국국적 보유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당초 제정안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나⁷⁾ 국가발전에 기여한 유사 해외 진출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환노위 심사과정에서 제외된 점을⁸⁾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기간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한 근로자(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베트남 등)⁹⁾ 대하여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계 정부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파독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거주국 관련 법률 적용이 원칙¹⁰⁾이며, 우리나라는 국

6) <참고> 의료·생활·주거지원금 등 관련 유사 입법례 p.12.

7)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0398,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제7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①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금액 산정,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소위원회(2020.5.11.) 심사과정에서 수정가결되었음.

9) 해외진출 근로자(한국노동통계연감, 1976) ① 베트남 25,287명('65~'75년), ② 일본 6,573명('65~'75년), ③ 중동 약 86만명('76년~'90년대 중반)

10) 국가가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는데, 파독근로자는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속지주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속인주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 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가(독립)유공자 또는 사할린동포가 국내 영주귀국시 정착 지원을 하는 등 극히 예외적으로 국가 공헌·희생 피해자 등에 한해 외국국적 동포를 개별지원하고 있음¹¹⁾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국가의 의료·생활·주거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자나 국가 공헌·희생에 따른 피해자 중 국내거주자¹²⁾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독근로자에 대한 지원 타당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유사 해외 진출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파독근로자의 60%가 제3국으로 이주한 상황에서 지원 대상의 규모 등 현황 파악과 비용추계가 어려워 향후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기획예산처는 현행 「의료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파독근로자도 해당 시 의료, 생계급여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파독근로자가 보훈대상자, 특수 피해자 등에 준해 의료·생활 지원을 받을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사

1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① 정부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국에 필요한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2.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4. 그 밖에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타 국가 파견 노동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재외동포청은 국외 거주 동포에게 복지급여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으며, 역사적 특수동포¹³⁾ 및 유사 해외 파견근로 동포 중 해외 거주 동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3)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할린 동포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동포에 대하여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그 피해를 구제하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의 일부 위임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련</u>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u>위임·위탁</u>) ----- ----- ----- ----- <u>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u> <u>위임하거나 관련</u>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의 시행을 위한 모든 권한은 국가로 일원화되어 있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¹⁴⁾으로 정하는 바에

14) 제6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현행법에 따른 국가의 권한(업무) 관련 조항

조 문	내 용
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1. 대한민국 또는 거주 중인 국가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의 제공 2.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3.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제4조 (기념사업 등)	1.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 효과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협력체계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15)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벌칙과 같은 침익적 내용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내용들이 침익적인 내용에 해당되

15)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 않아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파독 광부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 중¹⁶⁾에 있으므로 개정안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16) (전북)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24.5.31) / (경북)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24.1.11) /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조례('19.6.27)

참고

의료 · 생활 · 주거지원금 관련 유사 입법례

구분	의료지원금	생활·주거지원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의료급여(제12조의3) -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 및 치료 지급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제8조)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금품 • 주거급여(제11조) -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의료급여법 및 주거약자법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의사상자법 등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주거약자법: 주거생활 지원 - 65세 이상, 장애인 및 일정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국가 유공자법	• 국비진료(제42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대상 보훈병원 진료 • 감면진료(제42조) - 의료지원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등 대상 보훈병원 진료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위탁병원 진료	• 생활조정수당(제14조)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지급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 피해자 보호법	• 손실 복구 지원 등(제7조) - 치료비: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적 피해 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 손실 복구 지원 등(제7조) - 생계비: 범죄피해자의 근로 능력 상실 또는 유족에 대한 생계지원 필요 시(「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대검 예규)」)
세월호 피해 지원법	• 의료지원금(제23조) - 피해자의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 생활지원금(제23조) -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인 생활지원금

구분	의료지원금	생활·주거지원금
5·18 보상법	• 의료지원금(제6조) - 5·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를 입은 사람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은 치료·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일시 지급 • 의료급여의 지원(제6조의3) -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음	• 생활지원금(제7조) -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지원금(제22조)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부마항쟁 보상법	• 의료지원금(제23조) -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해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해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	• 생활지원금(제22조) -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그 정도가 경미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
위안부 피해자법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제4조)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의 지원	•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제4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제5조)
포항지진 피해 구제법	•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제14조) -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치료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 등)	•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제14조) -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임시 주거비용, 휴업기간 고정비용 등)

구분	의료지원금	생활·주거지원금
국군포로 송환법	• 의료지원(제14조) -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	• 위로지원금(제11조) -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위로 및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위로지원금 지급 • 주거지원(제13조) -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해 보증금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강제동원 조사법	• 의료지원금(제6조)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